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2153
-----------	------

2021년 3월 3일
교 육 위 원 회

I .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2월 5일, 이동현 의원

2.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3. 상정일자

○ 제299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1년 03월 03일 상정, 수정 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동현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관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가치 교육을 체계화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 구성원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고 사회적 책임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사회적가치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이동현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153호로 발의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취지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안전, 평등,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적 책임성과 그에 따른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의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을 위한 ‘사회적 가치’의 이해」(2018. 8. 13)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은 OECD 중 제일 높은 실정이고, 연간 노동시간에 비해 사회복지는 OECD 최하 수준이며,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역시 제일 낮은 상황에 직면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가치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인한 수년간의 저성장·양극화 문제는 공동체의 붕괴와 갈등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회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UN은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환경보전, 빈곤퇴치, 성평등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결의한 바 있고,

현 정부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국정과제 12)’, ‘사회적경제 활성화(국제과제 26)’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¹⁾

또한 국회에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²⁾ 발의되어 있는 등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사회적 가치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이 공무원과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은 교육분야 차원에서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과 합치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1) 청와대 국정과제(<https://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page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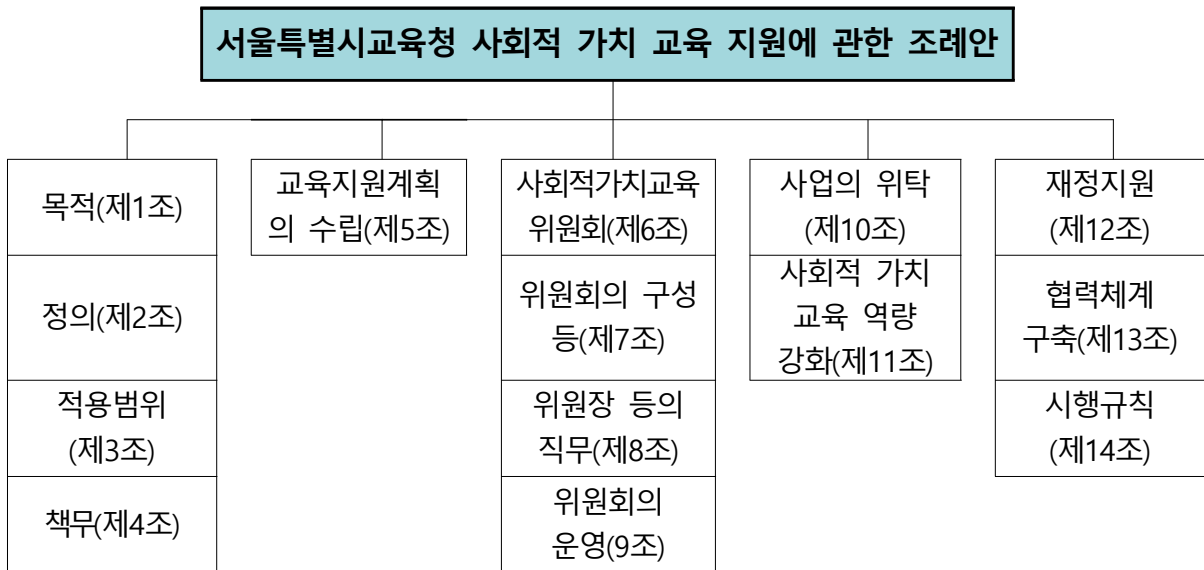
2) 박광온 의원안과 홍익표 의원안이 계류 중임.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교육공무원 및 학생 등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고 사회적 책임성 및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회적 가치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사회적가치교육위원회의 설치, 사업의 위탁을 통한 전문기관 및 민간 등의 참여 보장과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의 구축 등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체계>



2)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안 제2조)

- 동 조례안은 ‘사회적 가치’의 정의와 관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등 총 15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가치’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아직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는 상황

이며, 다만 개별법에서 ‘사회적기업’, ‘사회적 책임’, ‘사회적책임경영’, ‘공익적 목적’ 등의 개념을 정의하거나 원용한 사례가 있을 뿐입니다.³⁾

- 외국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영국의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 2012」 (Public Services(Social Value) Act 2012)이 있으나, 동 법률은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계약 및 그와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지를 고려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서⁴⁾ 중앙정부기관 등이 공공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⁵⁾
- 한편, 행정안전부의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을 위한 ‘사회적 가치’의 이해」 (2018. 8. 13)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고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구성하는 13개 요소를 제시하고 있고,

<사회적 가치를 구성하는 13개 요소>

1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2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3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4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획제공과 사회통합
6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7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8	지역사회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9	경제적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10	윤리적 생산·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11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12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13	그밖에 공동체 이익실현과 공공의 강화

3) 사회적 가치 또는 유사 개념에 관한 국내 입법례는 [붙임1] 참고.

4) An Act to require public authorities to have regard to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well-being in connection with public services contract; and for connected purpose.

5) 한국법제연구원, 영국의 「사회적 가치법」, 최신외국법제정보, 2017. 참고.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외국 제도 사례는 [붙임2] 참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역시 이와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동 조례안은 정부의 13개 요소 외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과 ‘문화적 권리의 보장과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가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사회적 가치 교육 역량 강화(안 제11조)

○ 동 조례안 제11조는 제1항에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을 위한 각종 연수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사회적 가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후단의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 대한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동 조례안 제3조가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1.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 제11조제2항의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범위도 이러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시행규칙을 통해 사회적 가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그 밖의 검토 의견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자치입법 업무매뉴얼(2020년판)’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에 따라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교육청도 조례안 제정에 따른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2275, 2021.2.17.).

다만 동 조례안의 경우 입안 형식상 다소의 오류가 있고(안 제3조), 안 제6조 및 안 제10조에서 인용 조문의 오기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

원안	수정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u>학생</u> 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원안과 같음)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u>학생</u>
제6조(사회적가치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 4.(생략)	제6조(사회적가치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원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 4.(원안과 같음)
제10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6조 지원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의 일부를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5조 지원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의 일부를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자치입법 업무매뉴얼」에 따른 체계·자구 수정

VII.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153
----------	------------

제안연월일 : 2021년 3월 3일
제안자 : 교 육 위 원 장

I. 수정이유

- 「자치입법 업무매뉴얼」에 따른 체계·자구 수정

II. 주요내용

1. 체계자구 수정(안 제3조, 안 제6조 및 제10조)

III.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호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를 “학생”으로 한다.

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안 제10조제1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원안과 같음)</p> <p>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p>
<p>제6조(사회적가치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생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p> <p>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p> <p>2. ~ 4.(생략)</p>	<p>제6조(사회적가치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원안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p> <p>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p> <p>2. ~ 4.(원안과 같음)</p>
<p>제10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6조 지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의 일부를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10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5조 지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의 일부를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공무원 및 학생 등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고 사회적 책임성 및 역량 강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괄한다.

1.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2.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3.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4.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증진
6.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7.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8.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9.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10.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11.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12.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13.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
14. 문화적 권리의 보장과 일과 여가의 조화
15.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종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사회적 가치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 가치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교육 추진 방안
3. 사회적 가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사회적 가치 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5. 지원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적가치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가치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가치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가치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회적 가치 교육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

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3. 사회적 가치 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 가치 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4. 사회적 가치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 대표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5조 지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의 일부를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적 가치 교육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을 위하여 각종 연수 활성화, 사회적 가치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사회적 가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